

부속서 I

관세 양허표

태국

두주

1. 이 양허표에 언급된 태국 품목분류번호의 8자리 코드는 2012년도 아세안 통합관세 품목분류표(AHTN)에 기초한다.
 2. 이 양허표의 각 인하 단계에 “U” 로 표시된 세번은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제외된다.
 3. 이 양허표의 목적상,
 - 가. 비고 열의 “**약속 안함**” 은 그 열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특정 세번에 대하여 이 협정상 관세 양허가 없음을 말하며, 그리고
 - 나. **아세안**은 아세안 회원국을 말한다.
 4.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(이하 이 양허표에서 “OEM”이라 한다) 조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번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특혜 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다.
 - 가.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조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, 또는
 - 나.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생산자에 전달될 그러한 부품 및 부속품의 조립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
- 인증 절차는 태국이 지정하는 당국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.